

의안번호	2126310
의 퇴 인	송갑석의원
회 답 일	2024. 1. 26.
추계번호	24A0067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기간 전력 설비 확충위원회 설치)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제1항)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2항) －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등 송·변·배전설비 개발 및 무탄소 전원, 국가첨단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는 사업심의,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2	안 제35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는 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37조(조세 등의 감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6310)

4	안 제38조(자금의 지원)	○ 국가는 확충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1. 확충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 2. 제28조¹⁾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특례의 경우 - 3. 제36조제2항²⁾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확충사업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 100분의 50씩 부담함(제2항)	재량규정
---	----------------	---	------

제28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확충사업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6310)

제36조(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① 확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 시 투자 및 용자 지원
2.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확충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국가기간 전력 설비 확충위원회 설치)	○ 미대상: 유사사례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³⁾ 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는 경우,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⁴⁾ 은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2	안 제35조(국가 등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37조(조세 등의 감면)	
	안 제38조(자금의 지원)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설비 설치 및 개발사업을 위한 국가 지원과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35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8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 제38조제1항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7조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2.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평균 3회 개최되고 있으며,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 1회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원/연 정도 소요됨

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35조제1항과 안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대상 및 규모,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이에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신헌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헌태	02-6788-4653	heontshin@nabo.go.kr